

October 15, 2026

2026 정부 세제개편안 국제조세 분야 분석과 대응

I. 머리말

재정경제부는 2026.8.3. “2026 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관련 11 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법안의 일부가 수정되었고 정부안은 9 월 1 일 최종 확정하였고 9 월 3 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들 개정 세법안은 금년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과 함께 금년 12 월 중에 법령개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기에서는 정부가确定的 금년도 세제개편안 중 국제조세 분야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런데 글로벌최저한세 관련한 세법개정 내용은 창간호의 다른 특집기사에 다루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II. 해외진출 기업 관련 세제 개편 내용

1.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에 해외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포함 명확화(법인령 §94①)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❶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 ❷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❸ 소득 외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으로 한정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을 추가한다. QDMTT 는 특정 국가 내에서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들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저율과세되는 경우, 그 저율과세분을 해당 국가가 자국 내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세액이다. 개정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QDMTT 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외 소재 구성기업이 현지국에서 QDMTT 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의 이중과세가 방지된다. 또한 본 개정은 Side-by-Side Package 의 병행체계 적용면제 요건(QDMTT 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한국의 적격병행체계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해외진출한 한국의 다국적기업이 과거 수년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법령개정 요구사항이 수용된 것으로서, 이들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 (국기법§26 의 2③)

현행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3 항은, 이월결손금 등 공제시 부과제척기간 특례(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 년) 적용 대상을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과 '조특법상 이월된 세액공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으로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추가하였다. 개정 규정은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분부터 적용한다.

납세자 측면의 시사점: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이 있는 납세자는 이월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발생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공제연도 법정신고기한부터 1 년까지 연장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월공제기간이 10 년이므로 발생연도는 사실상 11 년 이상 과세당국의 검증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 납부증명서, 외국 세무신고서, 국외원천소득 산정 및 공통비용 배분 근거, 국가별 공제한도 계산 내역 등 발생연도 증빙을 마지막 공제연도까지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이월액을 원천연도별·국가별로 구분하고 각 원천연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점까지 추적하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과세당국 측면의 시사점: 과세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공제되는 이월 외국납부세액의 존부와 금액을 원천연도 차원에서 검증하고 경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이월결손금,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에 걸쳐 이월공제 항목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외 구조조정 및 해외투자 관련 과세특례

가. 국외 구조조정시 주식배당 과세이연 (법인법§18 의 4, 법인령§72②)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 (95% → 100%)

현행 법인세법 제 18 조의 4 에 따르면, 외국자회사(지분 10% 이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95%이다. 개정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자회사 구조조정 시 주식배당에 대해 100%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한다: ① 조세조약체결국 소재 자회사 및 손자회사, ② 소재지국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에

해당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③ 완전지배관계인 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 지분 전체를 현물 배당, ④ 외국자회사와 그 손자회사가 각각 5년 이상 사업 영위.

개정 규정은 2027.1.1.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된다.

(2) 취득가액 하향조정 (시가의 100% → 95%)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 조 제 2 항에 따르면, 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고,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에 따라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해당 주식 시가의 95%로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국외 구조조정 시 취득한 주식배당에 대해 주식배당금액을 100% 익금불산입하되,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배당금액의 95%로 낮춤으로써 향후 해당 주식 처분 시 5%가 양도차익에 포함되도록 하는 구조로 과세이연을 허용함을 의미한다. 개정 규정은 2027.1.1.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된다.

나.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시 모회사 의제배당 과세이연 (법인령§14 신설)

그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사업 구조조정(분할 등)을 추진할 때, 분할 과정에서 교부받는 주식이 '의제배당'으로 취급되어 즉시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한 조세 부담이 해외 진출 기업의 유연한 지배구조 재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의 분할에 대해서는 주식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가 신설된다.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분할 범위는 ① 인적분할 또는 ②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 전체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이다. 과세이연은 아래 4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i) 사업 영위 기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의 분할일 것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로서 자산·부채를 포괄적 승계)
- (ii) 지분 비율: 내국법인이 100% 완전지배하는 해외자회사일 것
- (iii) 조세조약: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일 것
- (vi) 현지 과세 혜택: 해외 자회사 분할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것

과세이연 처리 방식은,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종전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향후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되도록 이연한다. 개정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생산법인이나 거점 자회사의 사업부문 분할·재편 시 즉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지배구조 효율화 작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① 현지 국가에서의 비과세·과세이연 적용 여부, ② 100% 완전지배 지분을 요건, ③ 포괄적 사업 승계 요건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증한 후 진행해야 과세이연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 (상증법§63②)

그 동안 국내 상장추진 비상장주식에만 적용되던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액) 방식 [즉,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평가]을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에도 확대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2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외 증권거래소(NYSE, NASDAQ 등) IPO 를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27.1.1.이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주식 평가 방법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라.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104 의 15)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15 에 규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요건(❶ 광업권·조광권 취득, ❷ 광업권·조광권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광업권·조광권 소유)에 대한 출자, 또는 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증자·자금대여)을 충족하는 자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 및 출자 금액 중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12.31 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12.31 까지로 연장한다.

마.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상증령§35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증여세 비과세 대상 단체에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추가한다. 이는 한미간 반도체·이차전지·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개정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해당 시행령 규정은 2026 년중 개정할 예정이다.

3. 국제조세 신고기준 및 제재 강화

가. 해외신탁 관리 강화 (국기법§84 의 2①, 국조법§91④)

국세기본법 제 84 조의 2 제 1 항은 탈세신고, 체납자의 재산은닉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을 신고하거나 자료제공을 하는 경우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를 추가한다. 또한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이 2 천만~2 억원 이하는 15%, 2 억원 초과~5 억원 이하는 10%, 5 억원 초과분 5%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2 억원 초과분에 대해 10%를 적용함으로써 제보·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국조법 제 91 조 제 4 항에서는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를 1 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과태료 한도액을 10 억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신탁 신고 불이행 과태료 한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한도액과 동일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신탁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복부과를 배제한다. 개정 규정은 2027.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재 강화(국기법 §85 의 5)

현행 국세기본법 제 85 조의 5 는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소신고 금액이 50 억원 초과인 자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대상 기준금액을 과소신고 금액 50 억원 초과에서 30 억원 초과로 하향함으로써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20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 과태료 부과 사유에 중요한 누락 및 오류 추가 (국조법 제 87 조)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 87 조 제 1 항에 따르면, (i) 이전가격 관련 보고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ii)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iii)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 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자료의 정합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III. 국내진출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 개편 내용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세율 인상 (조특법 제 18 조의 2)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18 조의 2 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 년 이내에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소득, 조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내국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일세율을 현행 19%에서 21%로 인상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 년 12 월 31 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파견한 주재원의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파견비용을 재산정하고 보상체계(compensation package) 설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개편 (조특법 제 1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

현행 조특법 제 1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르면, 외국인기술자 및 연구원은 10 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적용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행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요건을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 학위"로 변경하였다. 또한, 대상기관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할 것" 요건을 대체하여, 해당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 (i)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 (ii)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경우
- (iii)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경우
- (iv)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

개정 규정은 2027 년 4 월 1 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내국인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률적인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조세혜택을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박사급 고급 외국인 전문인력"에 선별적으로 집중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는 다국적기업 및 국내 기업은 인사 및 재무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 (조특법 제 104 조의 31)

국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e Vehicle, 이하 "PFV")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단계 과세(single-tier taxation)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i) 적격 특수목적 프로젝트회사로서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지될 것
- (ii) 지배구조, 업무위탁, 자본금 및 사업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 (iii)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것
- (iv) 소득공제 신청서를 소정의 방식에 따라 제출할 것
- (v) 법정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금액은 PFV 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경제적으로 지급배당공제(dividends-paid deduction)와 같이 기능하며, 투자자에게 분배된 소득은 PFV 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PFV 자체가 세법상 완전한 도관(fully tax-transparent)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조특법 제 104 조의 31 은 2028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본 소득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적용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상기 소득공제 특례가 영구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4.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금융거래 대상 상품 추가 (법인세법 제 98 조의 8)

2023 년 12 월 31 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법 제 98 조의 8 에 따르면, 소득지급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 지급 단계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 98 조의 8 제 1 항). 여기서 외국인 통합계좌란 외국 증권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매매 주문 및 결제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 증권회사 등에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본 제도는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대형 글로벌 투자자(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증권회사가 다수 고객의 주문을 통합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도입되었다.

외국인 통합계좌의 특성상 소득 지급 시점에 최종 투자자(실질귀속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본 규정은 우선 국내 세법에서 정한 세율(법인세법 제 98 조 제 1 항)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이후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 년 이내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법인세법 제 98 조의 8 제 2 항 및 제 3 항).

현재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그 대상이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까지 확대된다. 거래 가능한 상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2027 년 1 월 1 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5. 외국법인과 의 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 정비 (부가세법 시행령 제 95 조)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95 조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적용 범위는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적용 범위를 유지하되,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개정 취지는 납세편의 제고에 있으며,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리납부 적용 여부는 공급되는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에 좌우된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용역의 수행 장소, 국내사업장의 기능적·인적 관여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이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반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관련성 판단에 따라 대리납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거래 유형별로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관련성 판단이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서 증빙 발급 여부의 확인으로 단순화되며, 그 결과 대리납부 규정과 일반 부가가치세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해진다. 실무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통하여 자신의 거래가 국내사업장 관련 거래로 취급될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단순한 증빙 행위를 넘어 과세 방식을 결정하는 절차적 선택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점에서 납세편의가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맺음말

2026 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제조세 분야는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과 구조조정 장애를 덜어주는 지원책과, 국제거래·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의무와 제재를 강화하는 관리책이 함께 담긴 것이 특징이다. QDMTT 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국외 구조조정에 따른 주식배당과 외국자회사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이연은 그동안 해외진출 기업이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글로벌최저한세 체제와 해외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생기는 세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특례는 완전지배관계, 5 년 이상 사업 영위,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현지국의 비과세·과세이연 적용 등 요건이 엄격하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전에 국내외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증하는 것이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리는 전제가 된다.

한편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한도 상향,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준 하향, 국제거래 자료의 중요한 누락·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은 해외자산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보 수집과 사후 검증이 한층 강화된다는 신호이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분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개정도 같은 흐름에 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은 단순히 기한 내에 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출 자료의 정합성과 완전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이월공제 등 장기간 효력이 미치는 항목은 원천연도별 증빙을 장기 보존하는 내부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내진출 외국인투자 분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인상과 외국인기술자 감면요건 강화를 통해 조세지원이 일률적 지원에서 첨단·전략기술 분야 고급인력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고 있다. 반면 PFV 소득공제 영구화, 외국인 통합계좌 대상

상품 확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 정비는 투자 환경의 예측가능성과 납세편의를 높이는 방향이다. 다국적기업은 주재원 보상체계와 외국인 인력 채용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상당수 세부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 경과와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사전에 대응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구성원

김태균

공인회계사

T 02.3404.0574

E taekyoon.kim@bkl.co.kr

이경근

고문

T 02.3404.7579

E kyunggeun.lee@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